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

Ⅰ. 법 제11조제1항제1호

○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사인 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개방이사추천위원회	7	3	사립학교법 제14조
2	대학평의원회	19	7	사립학교법 제14조
3	동물실험윤리위원회	11	3	동물보호법 제4조
4	생명윤리위원회	15	3	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
5	생물안전위원회	10	2	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5조, 제6조
6	언더우드기념사업회	12	4	언더우드기념사업회 규정 (학교 규정)
7	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	12	5	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한 관한 특별법 제10조

Ⅱ. 법 제11조제1항제2호 : 해당사항 없음

○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			
2			

※ 위임·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·기관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Ⅲ. 법 제11조제1항제3호 : 해당사항 없음

○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1		
2		

Ⅳ. 법 제11조제1항제4호 : 해당사항 없음

○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연번	법인·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·평가규정(조항)
1			
2			

※ 심의·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명을 '개인'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